



소통하는 의정
공감받는 의회

제38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(제2차 교육위원회)
2020. 7. 15.(수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

교육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영주 의원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: 2020년 6월 29일
- 회부일자: 2020년 7월 2일

3. 제안이유

- 중대한 사회·자연재난이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장기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,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을 학생에게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, 제2조)
- 교육감의 책무(안 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4조)
- 지원 대상(안 제5조)
- 지원 방법 등(안 제6조)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에 따라 교육활동이 장기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학생이 학습 등 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였고, 안 제5조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,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음.
- 안 제2조와 안 제5조의 규정을 통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.

지역	설립	대상 교육기관	지원 대상자
충청북도	국립 공립 사립	유치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유아교육법」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휴원한 유치원의 원아 · 교육재난으로 재택 또는 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유치원의 원아
		초등학교, 중학교·고등공민학교, 고등학교·고등기술학교, 특수학교, 각종학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 또는 휴원한 학교의 학생 · 교육재난으로 재택 또는 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
		충청북도교육감이 지정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고등학교 과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충청북도교육감의 권고에 따라 운영을 중단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생 · 교육재난으로 재택 또는 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생

- 아울러, 안 제6조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재난의 보전에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로 지원하되,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였음.

-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지난 5월 코로나19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과 학부모 부담 해소를 위해 급식비 예산을 활용한 ‘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’ 공급 사업을 실시한 바 있음.

- 본 조례 제정에 따라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경우, 앞으로 교육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다 신속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나아가 재난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